

추 가 약 정 서

(멸실조건부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추가약정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20 년 월 일

채무자 : (인)

주소 :

채무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주택매매사업자가 非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입 주택을 멸실하는 것을 대출 취급 조건으로 정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은행과 추가로 약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구입대상 주택)

채무자가 구입하는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종류	주소

제3조 (멸실증빙 제출)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의 멸실이 완료된 경우, 멸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채무자가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멸실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되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